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목 차>

1.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영양사 겸직 규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이름	정현정
	담당부서 (과)	식품안전정책과		직급	식품위생주사
	국장	김성곤		연락처	043-719-2014
	과장	최종동		이메일	silverx1@mail. go.kr

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영양사 겸직 규정											
	2.규제조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3.위임법령	식품위생법 제51조, 제52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11월 예정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과 관계없이 영양사, 조리사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의 겸직을 허용 하였으나 식수인원이 많은 급식소에서 겸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영양사, 조리사 개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조리사 또는 영양사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집단 급식소의 위생 관리 및 영양 관리 개선 											
	7.규제내용	○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급식인원수 300명 초과 집단급식소 중 영양사(또는 조리사)가 조리사(또는 영양사)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사업장</td> <td>257개소</td> </tr> <tr> <td>이해관계자</td> <td>급식인원수 300명 초과 집단급식소 운영자, 관련 협회 등</td> <td></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급식인원수 300명 초과 집단급식소 중 영양사(또는 조리사)가 조리사(또는 영양사)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사업장	257개소	이해관계자	급식인원수 300명 초과 집단급식소 운영자, 관련 협회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급식인원수 300명 초과 집단급식소 중 영양사(또는 조리사)가 조리사(또는 영양사)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사업장	257개소											
이해관계자	급식인원수 300명 초과 집단급식소 운영자, 관련 협회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대규모 집단급식소의 위생 관리 및 영양 관리 개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392.47		1,392.47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392.47	0	175.97			
15.규제정비 계획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79조의2(조리사·영양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의 규모) 법 제51조제1항제3호 및 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는 “1회 300명 이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서 원칙적으로 면허 및 자격 취득 요건과 절차, 직무의 내용이 다른 영양사와 조리사를 집단급식소에 각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 사람이 영양사와 조리사 두 가지 면허와 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만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하지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복수 면허를 인정함으로써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과중한 직무와 책임이 부담되고, 영양사, 조리사가 각각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2025.2.21. 시행할 예정임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여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347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정안은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서만 영양사·조리사가 복수 면허가 있는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 총리령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 중 영양사·조리사가 복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고용
	내용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양사(또는 조리사)가 조리사(또는 영양사) 업무를 겸하여 수행할 수 없고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고용
규제대안2	대안명	영양사·조리사가 복수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고용
	내용	모든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또는 조리사)가 조리사(또는 영양사) 업무를 겸하여 수행할 수 없고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고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사와 조리사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 개선되고, 해당 집단급식소 이용객의 식품 안전 향상 및 국민 영양 섭취 개선 기대 급식인원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조리사와 영양사의 의무 고용에 따른 비용도 규제대안2에 따른 비용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 집단급식소 중 영양사(또는 조리사)가 조리사(또는 영양사) 업무를 겸함으로 인해 영양사, 조리사 업무의 비효율 발생 가능 급식인원수 300인 이하인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양사나 조리사 신규 채용으로 인한 비용 발생 가능
규제대안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사와 조리사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 개선되고, 해당 집단급식소 이용객의 식품 안전 향상 및 영양 섭취 개선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양사나 조리사 개별 고용을 위한 신규채용으로 인한 비용 발생으로 경영부담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협회 등의 의견 수렴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개정안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개별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각각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영양사와 조리사 각각의 업무 효율을 개선하고, 집단급식소 이용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현행안을 유지할 경우, 영양사(또는 조리사)가 조리사(또는 영양사)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 또는 조리사에게 과중한 업무와 책임이 주어지게 되고,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각각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함
 - 2024년 9월 기준 집단급식소 13,545개소¹⁾ 중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곳은 총 2,832개소(전체 집단급식소 중 20.0%)이고, 이 중 급식인원수가 300명 초과 집단급식소 중 겸직을 하고 있는 급식소는 257개소임
 -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에서도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고용하도록 강제할 경우 이들 집단급식소의 인건비 지출액이 증가하여 식사 단가가 인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 집단급식소 이용객이 지불해야 하는 식비가 증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²⁾
- 따라서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고용(규제대안 1)'이 규제의 실효성 등의 차원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3. 규제목표

-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고용하도록 하여 영양사·조리사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

1)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수의 배치 등)를 적용 받는 초·중·고등학교 등은 제외

2) “단체급식은 국민 영양과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치며, 식재료 및 시간 자원의 경제적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을 통해서 영양적 요구를 충족시켜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고용하도록 하여 영양사·조리사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단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식품위생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은 종전사업자와 신규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므로 사업자간 차별성은 없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해당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식품위생법」 및 하위법령은 국민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계속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여 일몰 설정이 곤란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관련 규제가 아니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관련 규제가 아니므로 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관련 규제가 아니므로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관련 규제가 아니므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관련 규제가 아니므로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 없음

○ 타법사례

-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국립·공립유치원(이하 “국공립유치원”이라 한다)과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을 **1명 이상 교사로** 두어 제8조 각 호의 직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 중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교사를 1명씩** 둘 수 있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연구센터에서 비용분석 내용에 대해 전문가 검증 진행 중'

<규제대안 1 :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고용>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392.47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고용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392.47		1,392.4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392.47		1,392.47
기업순비용		1,392.47	연간균등순비용	175.97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급식인원수가 300인 이하인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급식소에서의 영양사와 조리사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겸직 중인 전체 집단급식소(2,832개소)의 약 9%인 257개소에 대해서만 규제가 강화되므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기존에 규제에 적용되지 않던 일부 집단급식소의 규제 적용 관련 반발 가능성이 존재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급식인원수가 300인 이하인 소규모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급식소에서의 영양사와 조리사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행정 운영을 위한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집단급식소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3. 규제 정비계획

해당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해당 없음	추후 검토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집단급식소의 급식인원수가 증가할수록 영양사, 조리사 각각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므로 급식 인원수와 무관하게 영양사(또는 조리사)가 조리사(또는 영양사) 업무를 겸임하도록 할 경우 각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집단급식소의 급식인원수가 300명 이하인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도 영양사, 조리사를 각각 고용하도록 하는 경우 이들 집단급식소의 운영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식재료 등의 구입을 위한 비용이 오히려 감소하고 이에 따라 영양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시에 소규모 업체에 고용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급식소의 급식인원수가 300명 초과인 업체를 대상으로 영양사, 조리사를 각각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규제연구센터에서 비용분석 내용에 대해 전문가 검증 진행 중’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고용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392.47		1,392.4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392.47		1,392.47
기업순비용		1,392.47	연간균등순비용	175.97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연구센터에서 비용분석 내용에 대해 전문가 검증 진행 중’

<규제대안1 :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고용>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급식소													
활동제목	평균급식인원수 300명 이하인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고용													
비용항목	노동													
비용	1,392,472,727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조리사 대체 채용에 따른 임금 차이 × 집단급식소 업체 수] (5662000 * 257)													
근거설명	○ 2024년 9월 기준 급식인원수 300인 초과 집단급식소 2,286개소 중 영양사가 조리사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집단급식소는 257개소임 <div style="text-align: center;"> <p><표>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고용 현황(' 24.9월 기준)</p>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head> <tr> <th rowspan="2">식수 인원</th> <th colspan="3">집단급식소(개소)</th> </tr> <tr> <th>겸직</th> <th>개별 채용</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300명 초과</td> <td>257</td> <td>2,029</td> <td>2,286</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 식품 위생법 외 기타 법령에서 영양사·조리사 배치기준이 있는 학교, 어린이집 등 제외 출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조회</p> </div>			식수 인원	집단급식소(개소)			겸직	개별 채용	합계	300명 초과	257	2,029	2,286
	식수 인원	집단급식소(개소)												
겸직		개별 채용	합계											
300명 초과	257	2,029	2,286											
○ 따라서 기존 조리 종사자를 조리사로 대체하는 것은 다음의 산식을 이용해서 비용 산출함 * 조리 업무 담당자를 조리사 면허 소지자로 대체 ⇒ 2,286개 집단급식소(급식인원 301명 이상) 중 257(약 11%)개소 × 임금 차이* = 257 × 5,662천원(연) = 1,455,134천원(연) ≒ 14.5억원 * 임금차이 = 신규 채용 조리사 임금 - 기존 조리 업무 담당자 임금 = 30,390천원(연) - 24,728천원(연) = 5,662천원(연) ※ 조리사 임금은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조리 업무 담당자 임금은 2024년 최저시급(9,860원)을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 사용														